

#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심 사 보 고 서

의 안 번호	1730
-----------	------

2024년 4월 30일  
교육 위원 회

### I. 심사경과

-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4년 4월 3일, 우형찬 의원
- 회부일자 : 2024년 4월 8일
- 상정일자 :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 
(2024년 4월 30일 상정, 수정가결)

### II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우형찬 의원)

#### 1. 제안이유

- 최근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학업 중단, 학교 밖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학업 중단에 비해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규모 파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현 실태를 보이고 있어, 교육부에서는 작년 11월 ‘학업중단 위기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’ 을 발표함.
- 위의 방안에 제시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, 협업, 데이터 기반 강화를

도모하고자, 교육감 외 학교장의 책무를 보다 명확히 하고,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등의 긴밀한 협력체계 등을 구축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“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”의 정의 내용을 명시함.(안 제2조제3호)

나. 학교장의 책무에 대한 조항을 신설함.(안 제4조)

다.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조항을 신설함.(안 제13조)

## III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김창범)

### 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개정조례안은 2024년 4월 3일 우형찬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1730호로 발의되어 2024년 4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개정조례안은 학교장의 책무로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지원센터에 제공함으로써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우려가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고,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등과 긴밀한 협업 기반 정책 추진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.

### 2. 주요 검토의견

가. 개정의 취지에 대한 검토

- 최근 교육부는 ‘2023년 학업중단 위기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’을 통해 학령기 학업중단 학생 수와 전체학생 대비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, 학업중단·학교 밖 청소년 발생 원인 역시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상황임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.

[표-1] 최근 서울시 초·중·고 학업중단을 및 학업중단자 현황

(단위 : 명)

연도	학업중단율(%)				학업중단자			
	계	초등학교	중학교	고등학교	계	초등학교	중학교	고등학교
2020	0.76	0.66	0.67	1.03	6,418	2,700	1,397	2,321
2021	1.11	1.01	0.81	1.58	9,165	4,051	1,702	3,412
2022	1.48	1.45	1.09	1.90	11,902	5,723	2,244	3,935

- 이처럼 증가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소외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교육부는 ‘원하면 언제든지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교 지원’ 정책<sup>1)</sup>을 추진하고 있으며, 서울시교육청 또한 ‘복교 지원 강화 및 진학 컨설팅 내실화<sup>2)</sup>’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.
-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및 정책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장의 책임을 제고하기 위한 역할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.
-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은 검정고시, 진학 준비 등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와 취업·직업훈련을 하는 등 해당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 개인별로 다양하고, 복합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어 관련 부처 간의 연계와 협력의 필요성이 높습니다.

1) 「학업중단 위기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」(관계부처 합동, 2023.11.)

2) 「2024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계획」(민주시민생활교육과-1906, 2024.2.2.)

-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학교장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기관 간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상황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책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다 할 것입니다.

[표-2] 학교 밖 청소년의 현재 상황 설문조사<sup>3)</sup>

구분	인원 수(명)	비율(%)
대안교육기관에 다님	13	2.3
검정고시 공부를 함	147	26.4
홈스쿨링	149	26.8
대학 입시 공부를 함	76	13.6
직업기술을 배움	12	2.2
자격증 취득 및 취직 시험 준비	21	3.8
아르바이트, 취직하여 일함	26	4.7
심리정서 상담·치료를 받음	35	6.3
학교에 복교하기 위한 준비	7	1.3
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지냄	37	6.6
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중	34	6.1
계	557	100

## 나. 개정 내용에 대한 검토

### 1) 정의(안 제2조제3호)에 대한 의견

- 안 제2조제3호는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교육, 직업체험 및 훈련, 상담, 자립 등의 지원사업을 “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.
- 현재 동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범위를 교육지원, 학습 지원 프로그램 운영, 직업체험 및 훈련 지원, 상담지원 등으로 규정

3)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운영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」(김명희, 2024.2.5.,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)  
 ※ 서울시 소재 도움센터에 등록된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

(제11조제2항제1호)<sup>4)</sup>하고 있고,

상위법인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학교밖청소년법’)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 지원, 교육지원,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, 자립지원 등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상범위로 규정<sup>5)</sup>하고 있습니다.

○ 이처럼 안 제2조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지원사업의 범위는 동 조례 뿐만 아니라 상위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 대상과 내용상 동일하다는 점에서 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.

○ 다만, 학교밖청소년법은 안 제2조제3호(“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”)와 달리 이를 “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”으로 정의하고 있는바,

‘사업’이 ‘프로그램’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라는 점, 그리고 이를 ‘프로그램’이 아닌 ‘사업’이라고 의미를 확장해서 규정하더라도 법령 해석 및 정책집행상 혼란의 소지가 적을 뿐만 아니라, 정의규정은 자치법규 자체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안 제2조제3호는 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<sup>6)</sup>

## 2) 학교장의 책무(안 제4조)에 대한 의견

○ 우선 안 제4조제1항은 ‘학교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, 학교밖청소년법 제15조<sup>7)</sup>에 따라 개인

4) 제11조(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설치) ① (생략)

② 도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

2.~6. (생략)

5)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~ 2. (생략)

3. “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”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, 교육지원,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,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.

6) 법제처(2022.9.1.), 「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」

정보를 연계하여야 한다’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
- 이와 관련하여 안 제4조제1항의 전단에 ‘학교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’ 하는 것은 해당 청소년에게 상담지원, 교육지원, 진로지원, 자립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한편 안 제4조제1항 후단의 ‘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연계하여야 한다.’ 는 규정은 내용상 안 제4조제2항과 의미상 동일한 내용을 중복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1항은 강행규정으로, 제2항은 임의규정으로 서로 법률 효과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더욱이 안 제4조제1항 후단은 문언상 의미로만 해석할 경우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어디로 연계하여야 할지에 대한 대상이 누락되어 있는 등 의미가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.
- 현행 학교밖청소년법 제15조는 소속 학교의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

7)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

제15조(지원센터와의 연계)①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의 각급 학교의 장(이하 이 조에서 “학교장”이라 한다)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 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.

②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포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(이하 이 조에서 “단체장”이라 한다)은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센터에 연계하는 경우 학교장 및 단체장은 해당 청소년(제6호의 경우 해당 청소년의 법정대리인)에게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(이하 “개인정보”라 한다)의 수집·이용 목적, 수집 항목, 보유·이용 기간 및 파기 방법(이하 “개인정보동의고지사항”이라 한다)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후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. 다만, 해당 청소년의 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정보동의고지사항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 제공할 수 있다.

1. 학교 밖 청소년의 성명
2. 학교 밖 청소년의 생년월일
3. 학교 밖 청소년의 성별
4. 학교 밖 청소년의 주소
5. 학교 밖 청소년의 연락처(전화번호·전자우편주소 등)
6. 학교 밖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연락처(전화번호·전자우편주소 등)

될 경우 학교장이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(제1항), 개인정보의 경우 의무교육대상자 여부에 따른 동의를 거쳐 학교장이 지원센터에 개인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(제3항 및 제4항).

- 또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는 지원센터가 학교의 장에게 정보제공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, 학교의 장은 지원센터에 학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만 규정<sup>8)</sup>되어 있습니다.

- 따라서 안 제4조제1항 후단은 학교장의 책무라는 조문 제명과 상위법인 학교밖청소년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, 그리고 안 제4조제2항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‘개인정보’가 아닌 ‘지원센터 연계’를 학교장의 책무로 보는 것이 법령 해석과 법조문과의 연관성에 비추어볼 때 타당하다 할 것인바,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.

○ 다음으로 안 제4조제2항은 ‘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연계하는 경우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3항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지원센터 및 교육감이 운영하는 도움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’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
-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안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‘개인정보’가 ‘지원센터’로의 수정이 필요한바, 안 제2항 역시 이를 반영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상위법령과의 체계상 정합성과 그리고 조례의 조문체계상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○ 다음으로 안 제4조제3항은 ‘학교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재취학, 재

---

8) 제7조(지원센터와의 연계) ① 지원센터는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안내 및 지원센터의 연계를 위하여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의 각급 학교의 장(이하 이 조에서 “학교장”이라 한다)과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포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(이하 이 조에서 “단체장”이라 한다)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② 학교장 또는 단체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 청소년의 법 제15조제3항 각 호의 개인정보를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교장 또는 단체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1. 학교장: 소속 학교의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
2. 단체장: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

입학을 한 경우 학교생활의 원활한 적응을 위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'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
- 현행 학교밖청소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고<sup>9)</sup>, 학교로 돌아올 경우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<sup>10)</sup>하고 있습니다.
- 그러나 현행 학교밖청소년법은 이러한 지원의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고,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교육감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, 교육감의 경우 법령개정 및 시행일에 따라 금년 9월 27일부터 주체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.
- 더욱이 법령 시행에 따라 교육감이 지원의 주체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교육감이 학교장에게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을 뿐, 학교장은 이에 대해 의무적으로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.
- 따라서 안 제4조제3항은 상위법령에서 학교장에게 요구하는 역할에 대해 다소 배치되는 측면이 있는바, 상위법령이 학교장에게 부여한 역할에 맞게 조문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.

---

9) 제9조(교육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초등학교·중학교로의 재취학 또는 고등학교로의 재입학

2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60조의3의 대안학교로의 진학

3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7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·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준비

4.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10)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

제4조(교육지원의 방법 등) ① (생략)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법 제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취학, 재입학 또는 진학을 한 경우 학교생활의 원활한 적응을 위하여 해당 청소년에 대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해당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


3)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(안 제13조)에 대한 의견

- 안 제13조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, 청소년 지원 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,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공동대응체계를 마련하고, 기관 간 정보 연계 기반을 마련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방안을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입법적인 조치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밝혔습니다(행정관리담당관-4088, 2024. 4. 15.)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.

V. 토론요지 : 없음.

VI. 수정안의 요지

- 안 제4조제1항, 제2항에 “개인정보를 연계” 를 “지원센터를 연계” 로 수정함.
- 안 제4조제3항에 “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” 를 “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” 로 수정함.

VII. 심사결과 : 수정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.

VIII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.

IX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#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730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4년 4월 30일  
제안자 : 교육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동 조례안 제4조제1항 후단에 규정된 학교 밖 청소년의 “개인정보를 연계” 는 개인정보를 어디로 연계하여야 할지에 대한 대상이 누락되어 있고, 상위법인 학교밖청소년법에서 “지원센터를 연계”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“개인정보” 문구를 “지원센터” 로 수정함.
- 동 조례안 제4조제2항 전단에 규정된 “개인정보를 연계” 는 안 제1항과의 조문체계상 “지원센터를 연계” 로 수정함.
- 현행 학교밖청소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로 돌아올 경우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을 뿐 학교장은 이에 대해 의무적으로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, ‘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’ 문구를 ‘할 수 있다’ 로 수정함.

## 2. 주요내용

- “개인정보” 를 “지원센터” 로 수정함(안 제4조제1항).
- “개인정보를 연계” 를 “지원센터를 연계” 로 수정함(안 제4조제2항).
- “하여야 한다” 를 “할 수 있다” 로 수정함(안 제4조제3항).

**3. 참고사항 : 없음.**

##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제1항 중 “개인정보” 를 “지원센터” 로 한다.

안 제4조제2항 중 “개인정보를 연계” 를 “지원센터를 연계” 로 한다.

안 제4조제3항 중 “하여야 한다” 를 “할 수 있다” 로 한다.



활한 적응을 위하여 해당 청소년에 대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-----  
-----  
-----할 수 있다.

##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“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”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교육, 직업체험 및 훈련, 상담, 자립 등의 지원 사업을 말한다.

제12조를 제14조로 하고,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며, 제4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(학교장의 책무) ①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의 각급 학교의 장(이하 “학교장”이라 한다)은 소속학교의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,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따라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연계하는 경우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 제3항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지원센터 및 교육감이 운영하는 도움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.

③ 학교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재취학, 재입학을 한 경우 학교생활의 원활한 적응을 위하여 해당 청소년에 대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3조(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)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, 경찰청 등 유관기관,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

제4조 ~ 제11조 (생략)

<신설>

제12조 (생략)

적응을 위하여 해당 청소년에 대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5조 ~ 제12조 (현행 제4조부터 제11조까지와 같음)

제13조(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)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, 경찰청 등 유관기관,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14조 (현행 제12조와 같음)